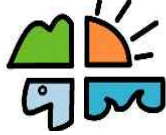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317호 2021년 3월 29일(월)

훈 령

- 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환경미화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인 관리형 매립시설의 환경업무 및 환경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이하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되어 폐기물처리시설내 매립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물 매립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정리, 운반차량의 유도·계근보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보조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후단 중 “「속초시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다.”를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5조 및 제7조·제8조·제9조는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을 “대민봉사자로서의 복무자세로”로 하며, 동조제3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3. 근무시간 위반, 무단결근,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제반 품위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여 항상 정비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주요행사 등)로 필요한 때에는”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종조제3항 중 “설날, 근로자의 날, 중추절은 아침근무 후”을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천재지변(지진 등), 기상특보(대설, 강풍, 집중호우 등) 발령 시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산불발생 시에는 이와 관련된 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정리, 매립장 방역, 폐기물 처리시설 일원 청소 및 제초작업, 반입폐기물 계근보조, 침출수 처리동 업무보조 등
2. 폐기물 매립시설 반입차량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도하고, 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반출되도록 지도·계도
3. 폐기물반입 계근대 근무 시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
4. 침출수 처리 관리를 함에 있어 유용미생물(EM) 배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오염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제14조제2항 후단의 “범위안”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으며, 그 밖의 병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후단의 “년”을 “연”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의할”을 “따를”로 한다.

제21조는 삭제한다.

제22조 후단의 “한 제11조 제4항”을 “한,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하고, “보시”를 “보 시”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본문 중 “5”을 “3”으로 한다.

제27조를 신설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많은 사항은 공무원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 1·별표 2·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미화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에서 폐기물 정리작업, 방역활동, 차량계근 보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보조 등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u>	<u>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미화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는 속초시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인 관리형 매립시설의 환경업무 및 환경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내에서의 쓰레기 정리작업, 방역, 계근보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보조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이하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되어 폐기물처리시설내 매립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물 매립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정리, 운반차량의 유도·계근보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보조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하여는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조(----)----- -----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책임) 환경미화원은 시민 전체	< 삭제 >

<u>의 봉사자로서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매립장 근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u>제5조(채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u> 1. <u>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미화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u> 2. <u>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u>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4. <u>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u> 5. <u>중기면허(굴삭기, 덤프)경력 소지자는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우선채용할 수 있다.</u>	<u>< 삭제 ></u>
제6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6조(-----) (현행과 같음)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u>< 삭제 ></u>
2.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2. (현행과 같음)
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3. (현행과 같음)

사람 제7조(해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임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의 휴직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3. 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인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4. 제25조의 처벌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 삭제 >
제8조(반장임명) ① 환경미화원을 지휘·통솔하고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1명으로 한다. ③ 반장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반장직을 해임할 수 있다.	< 삭제 >
제9조(근무지 배치) 속초시에서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일정기간 차출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	< 삭제 >
제10조(복무)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제10조(--) (현행과 같음)

호에 해당되는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구역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u>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u>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u>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위반, 무단결근, 근무시간 음주 및 주민에게 불친절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4. <u>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항상 정비하여 내 물건처럼 관리하여야 하며</u> 규정된 복장을 착용 근무하여야 한다. 5.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접대 받아서는 아니된다. 6. <u>반입하고 있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반입할 수 있도록 주민을 지도하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계도하여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u>대민봉사자로서의 복무자세로</u>----- ----- -----. 3. <u>근무시간 위반, 무단결근,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제반 품위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4. <u>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여 항상 정비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 5. (현행과 같음) 6. <u>< 삭제 ></u>
제11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한 사유(주요행사 등)로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설날, 근로자의 날, 중추절은 아침근무 후 휴무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및 기상 특보(제설, 호우시) 발령시 사전에 근무하게 하여 매립장 관리에 보조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 ③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 ④ 천재지변(지진 등), 기상특보(대설, 강풍, 집중호우 등) 발령 시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산발발생 시에는 이와 관련된 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청소장비 및 피복지급) 환경미화원에게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청소 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및 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업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반장 가. 지시사항 전파 및 근무지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애로·건의사항을 보고한다. 2. 매립장 근무원 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정리, 재활용품 수집 및 선	제13조(-----) ----- -----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정리, 매립장 방역, 폐기물 처리시설 일원 청소 및 제초작업, 반입폐기물 계근보조, 침출수 처리동 업무보조 등 2. 폐기물 매립시설 반입차량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도하고, 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 매립이 불

별, 대형폐기물 정리, 매립장
방역, 쓰레기 계근보조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
하여 침출수처리장 관리업무를
보조한다.

< 신설 >

< 신설 >

가한 폐기물은 반출되도록 지도·계
도

3. 폐기물반입 계근대 근무 시에
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
절한 안내

4. 침출수 처리 관리를 함에 있어
유용미생물(EM) 배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오염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제14조(휴가의 종류) ① 환경미화원
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
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
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에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연차휴가) ① 환경미화원이 1
년 중 8할 이상 근무할 시에는 연
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일수
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일수는 「근로기준
법」에 의한다.

제15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되, 제24조제2항 규정의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차휴가 일수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허가하며, 하계휴가는 3일 이내로 한다.

④ 결근일수, 병가, 휴가일수, 정직일수, 휴직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삭제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병가)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환경미화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제16조(병가) -----
 ---- 어느 하나-----
 -----범위-----
 ---으며, 그 밖의 병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있을 때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 조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가)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천재지변, 산업시찰 등 <u>기타</u>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7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u>그 밖의</u> -----
제18조(특별휴가) 다음 각 <u>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과 반장은 <u>년</u>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8조(----) -----<u>호의 어느 하나</u>----- -----.
2.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환경미화원은 퇴직 전일까지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 -----<u>연</u>----- ----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휴일 및 휴가)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 및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유급휴일 : 월 2회 2. 유급휴가 :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할 때	제20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따를</u> -
제21조(임금)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u>< 삭제 ></u>
제22조(보상)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상 특보시 근무할 경우 야간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 ----- ----- -----. 한, 제11조제4항 ----- <u>따라</u> --- --- <u>보 시</u> ----- -----.
제23조(신체검사)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책임 및 환자조치) ①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일수 연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	제24조(-----) ①·② (현행과 같음)

내의 기간 동안 휴직 조치한다.	
제25조(징계) 환경미화원이 제10조에 의한 복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 처벌기준은 별표 4와 같다.	<u>〈 삭제 〉</u>
제26조(관리카드) 환경미화원은 별표 5와 같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한다.	제26조(-----) ----- 3-----.
<u>〈 신설 〉</u>	<u>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많 은 사항은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u>

[별표 1]

환경미화원 근무시간표(제11조제1항 관련)

○ 평일(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포함)

근무지	아침근무	오전근무	오후근무
폐기물 매립시설	06:00 ~ 08:00(2시간)	08:00 ~ 12:00(4시간)	13:00 ~ 17:00(4시간)

비고 : 아침(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근무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 시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

근속연수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휴 가 일 수	구 분	휴가일수
1년	15일	15년	22일
2년		16년	
3년	16일	17년	23일
4년		18년	
5년	17일	19년	24일
6년		20년	
7년	18일	21년	25일
8년		22년	
9년	19일	23년	
10년		24년	
11년	20일	25년	
12년		25년	
13년	21일		
14년			

비고 : 휴가일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부터 제7항
까지 규정 적용한다.

[별표 3]

환경미화원 관리카드(제26조 관련)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주 소			전 화				
			특 기		취 미		
병역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 용 일	임금일당	상 여 금	담당업무	비 고	
기타사항							